

돼지 혼합정액 산육능력 확인업무 취급요령

1998. 6. 12 제정 (이사회승인)

제1조 (목적) 본 요령은 축산법 제19조에 의거 정액등 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종돈으로부터 정액을 채취·처리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혼합정액을 생산하여 유통시키는데 있어 산육능력을 공시하므로써 비 허가업체의 정액생산 공급의 난립을 막고 순수종과의 난교배를 방지하며 비육용 자돈 생산에만 이용하도록 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액확인) ① 혼합정액이라 함은 동일 품종에서 생산된 혼합정액을 말한다.

② 정액능력의 확인은 다음 품종의 정액을 생산하여 혼합 공급하는 정액에 대하여 산육능력을 확인한다.

1. 랜드레이스종
2. 대요크셔종
3. 두록종
4. 햄프셔종
5. 기타 본회가 인정하는 품종

제3조 (확인대상) 혼합정액의 산육능력검정을 받은 고등등록돈으로서 정액등 처리업 생산

기준에 합격한 돼지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4조 (신청) 혼합정액의 산육능력확인을 받으려는 돼지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발급) 본 산육능력확인인 정부 승인사업 이외의 돼지 인공수정사업소의 자율적인 협조사업으로서 제11조에 근거한 산육능력확인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시킨다.

제6조 (취소) 혼합정액의 산육능력확인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산육능력확인을 취소하고 발급받은 스티커는 반납토록 한다.

제7조 (정액생산계획) 본회의 혼합정액 능력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채취, 처리하는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계획을 연도 개시 1월전에 제출받아 혈통 및 능력확인 업무에 참고한다.

제8조 (확인회비 징수와 적용) ① 혼합정액 산육능력확인 회비는 각각의 정액공급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확인회비는 종돈개량사업비에 충당, 적용한다.

③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한 비용이 필요할때에는 그 신청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회비 또는 비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국 돼지인공수정사업소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교육) ① 축산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 처리업자 및 비육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돼지개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돈 농가에게 정액혈통 및 산육능력확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정액제조 확인) 본회는 정액 산육능력확인 사업을 위하여 정액을 생산하는 종모축에 대하여는 정액제조확인 및 종돈의 활용가치 여부를 년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제품의 표시) 혼합정액의 제품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공급한다.

돼지 혼합정액 산육능력 확인서

정액의 명칭	혼합정액 (DD. WW. HH. LL)
능력확인 일련번호	
AI업체명 및 생산자	한국돼지인공수정사업소 협의회 돼지인공수정센터
제조년월일	19 년 월 일
능력기준	본 정액은 축산법 제19조(정액 처리업등의 허가) 제①항과 ②항에 근거한 종돈에서 생산하여 혼합한 정액임
주의사항	본 정액은 비육돈 생산용이므로 순종번식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제품의 표시가 없는 정액은 불법정액임
산육능력 확인자	(사) 한국종축개량협회

제12조 (세부절차) 이 요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은 본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본 요령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돼지혼합정액 산육능력확인서 발급 신청서

품 종	수 량(매)	대상 종모돈 개체번호(등록번호)

상기와 같이 돼지 혼합정액 산육능력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단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법인